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14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나548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14131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형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성창석

변론종결 2022. 12. 6.

판결선고 2023. 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2022. 1. 19.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아들인 피고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1분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원고의 상태를 이용해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우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지적하는 소송위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머무르던 요양원에서 장녀로부터 “C아파트를 팔고 싶어? B(피고)에게 줘서 팔게 하고 싶어?”라는 질문을 받고 “안 팔어. 안 하고 싶어.”라고 답변하고 사건명이 공란인 소송위임장에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 그 후에도 장녀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12호증,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음향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37년생으로 2019. 8.경 처음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서서히 그 병이 진행되다가 2020년 추석 무렵부터 증상이 심화되어 단기 기억력과 이해력에 현저한 저하를 보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내원하여 신경과 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판단력, 수행력의 모든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재차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에 피고와의 대화, 그리고 차녀와의 대화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수차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위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대리인은 원고가 소송위임 3개월 전에 이미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후 3개월 만에 그와 같은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전혀 없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송위임장에 서명, 무인할 당시 그 의미나 효과에 관하여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 계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청구원인과 3개월 후 원고 본인의 소송위임은 적법하다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모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소송대리인에게 그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4.자 2014마381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